

최신 판례

前 충남지사의 강제추행 등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대법원 2019도2562]



▣ 사안의 내용

●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전 충남도지사임
- 피해자는 2017. 7. 3. ~ 2017. 12. 20. 피고인의 수행비서로, 2017. 12. 21. ~ 2018. 3. 7. 피고인의 정무비서로 근무했던 자임
- 피고인은 아래 소송경과 부분의 표 기재와 같이 2017. 7. 29.경부터 2018. 2. 25.경까지 약 7개월 동안 피해자를 4회 위력으로

간음하고, 1회 위력으로 추행하였으며, 5회 강제로 추행하였음

● 적용법조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구 형법(2018. 10. 16. 개정 전) 제303조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¹⁾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소송경과**

- 제1심 : 전부 무죄
- 원심 : 일부 유죄 (징역 3년 6월, 법정구속)

■ **대법원의 판단**

● **법리²⁾**

•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음(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됨(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음.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 판단이라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 피감독자간음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 있어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

1) 2018. 10. 16. 개정으로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음

2) (참고) 이하의 법리는 새로운 판시가 아니라 이미 반복적으로 판시되어 온 것으로서, 2심은 물론 1심 역시 그 판단의 전제로 삼고 있는 확립된 법리임

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함.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029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유죄 부분)

- (위력 간음, 위력 추행 부분)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음
 -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음
 - 피해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무렵에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와 □□□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음
 - 피해자가 범행 전후에 보인 일부 언행 등이 성범죄 피해자라면 보일 수 없는 행동이라고 보기도 어렵거나, 그러한 사정을 들어 피해자의 피해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움
 - 피고인의 지위나 권세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무형적세력에 해당함
 - 여기에 피고인이 간음행위 또는 추행행

위에 이르게 된 경위, 간음행위 또는 추행 행위 직전·직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강제추행 부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아래 도지사 집무실에서의 강제추행 부분을 제외한) 4회의 강제추행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음

●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무죄 부분)

-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도지사 집무실에서의 강제추행 부분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음
- 또한 원심은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도 잘못이 없음

● 판결 결과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 피고인에 대하여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3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

■ 판결의 의의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사건을 검토한 결과, 원심 판단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업무상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음을 확인한 사례

이른바 ‘벤츠, BMW 배출가스 등 조작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대법원 2019도6588, 2019도6252]



이른바 ‘벤츠·BMW 배출가스 등 조작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대법원 2019도6588]

■ 사안의 개요

● 쟁점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지위

- 피고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주식회사 (이하 ‘피고인 회사’)는 자동차 수입,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법인임
-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에서 법규 및 인증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 관련 인증 업무를 담당한 사람임

(2) 피고인 A의 범행

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및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 자동차수입자가 자동차를 수입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함
- 그럼에도 피고인 A는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 부품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6,894대의 벤츠 승용차를 수입함

나. 관세법위반

- 누구든지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됨³⁾
-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 부품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인증을 받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법령에 따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동차’ 6,894대를 부정수입함

(3)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관세법을 각 위반함

● 소송경과

- 제1심 : [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회사] 벌금 28억 1,070만 원
 - 전부 유죄
- 원심 :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회사] 벌금 27억 390만 원
 - 무죄 : 자동차 349대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관세법 위반 부분 ☞ 피고인 A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가 선고되었음. 다만, 이 부분은 상고심 쟁점이 아님
 - 유죄 : 위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3) 관세법 제270조 ②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의 판단

● 쟁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 ‘변경보고의무’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상 ‘변경통보의무’가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한 ‘변경인증의무’의 절차를 간소화한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의무인지 여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34조 제1항은 변경인증 대상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위 각 조문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여도 배출가스의 양 또는 소음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해당 변경내용을 국립환경과 학원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도록 하면서 이 경우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음
 - 본 사안에서는 위 각 조문 제3항에서 규정하는 ‘변경보고의무’ 또는 ‘변경통보의무’가,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한 ‘변경인증의무’의 절차를 간소화한 것인지, 아니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더라도 배출가스의 양 또는 소음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애당초 변경인증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됨
 - 이는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에서 ‘변경인증의무 위반’을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논의의 실익이 있음
-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수입자동차의 경우, 관세법상 부정수입죄에서의 ‘수입’은 수입신고 수리시에 이루어지는지, 자동차가 보세구역을 물리적으로 벗어나야 완료되는지 여부

● **판결 결과**

상고기각 (원심 확정)

● **판단 내용**

- ‘변경보고의무’ 또는 ‘변경통보의무’는 ‘변경인증의무’의 절차를 간소화한 것임 ⇨ 따라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였음에도 (원래의)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는 물론, 변경보고나 변경통보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34조 제1항은 변경인증 대상을 특정하여 열거하고 있음
 - 위 각 조문 제3항도 그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채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여도 배출가스의 양 또는 소음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 대한 보고 또는 통보로써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⁴⁾고만 규정하고 있음
-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수입자동차의 경우, 수입신고 수리시에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되어 ‘수입’이 이루어진 것임
 - 관세법 제2조 제1호는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을 수입의 한 가지 형태로 규정하고 있음⁴⁾

4) 관세법 제2조 제1호 :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여기서 반입이란 물품이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되거나 자유유통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함(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354 판결 등 참조)
- 그런데 관세법 제2조 제5호 가목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을 ‘내국물품’이라고 규정하면서, ‘외국물품’에 대해서는 제4호 가목에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보세구역에서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수입자동차는 ‘수입신고 수리시’에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됨

■ **판결의 의의**

‘변경보고의무’ 또는 ‘변경통보의무’와 ‘변경인증의무’의 관계 및 보세구역에서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외국물품의 수입시기에 대하여 대법원이 명확한 법리를 판시한 사안

[대법원 2019도6252]

■ **사안의 개요**

● **쟁점 공소사실의 요지**

- 이 사건은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부분이 없는 점을 제외하면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6588 판결(벤츠사건)과 쟁점을 공유하고 있음 ⇨ 따라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대법원 2019도6588 사건(벤츠 사건) 보도자료 참조

- 즉, 배출가스 인증 내지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수입함으로써 대기환경보전법과 관세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임
- 그 외 관세법 제270조 제2항⁵⁾ 위반 관련하여 '수입신고를 마친 후 수입신고 수리 전에 수사기관에 적발된 부분'에 대하여는 관세법상 부정수입죄 미수로 기소되었음

● **소송경과**

- 제1심 : [피고인 B] 징역 8월 [피고인 C, D]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비엠티블 유코리아 주식회사] 벌금 145억 원
 - 전부 유죄
- 원심 : 항소기각

■ **대법원의 판단**

● **쟁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 '변경보고절차(의무)'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변경인증의무'를 간소화한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의무인지 여부
-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수입자동차의 경우, 관세법상 부정수입죄에서의 '수입'이 수입신고 수리 시에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자동차가 보세구역을 물리적으로 벗어나야 완료되는지 여부

- 관세법상 부정수입죄(제270조 제2항 위반죄)에서 실행의 착수시기가 세관장에 대한 수입신고 시인지 여부

● **판결 결과**

상고기각 (원심 확정)

● **판단 내용**

- '변경보고절차(의무)'는 '변경인증의무'를 간소화한 것임. ⇨ 따라서 변경보고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됨
-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수입자동차는 수입신고 수리시에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되어 '수입'이 이루어짐
- 관세법상 부정수입죄(제270조 제2항 위반죄)에서 실행의 착수시기는 세관장에 대한 수입신고 시임

■ **판결의 의의**

'변경보고절차(의무)'와 '변경인증의무'의 관계 및 보세구역에서 수입신고절차를 거치는 외국물품의 수입시기, 관세법상 부정수입죄(제270조 제2항 위반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에 대하여 대법원이 명확한 법리를 관시한 사안

5) 제270조 ②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